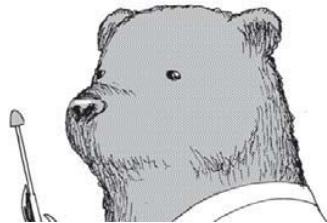


정보 윤리 소책자

Copyright © 2012
Izumi FUSE and Shigeto OKABE
Research Division of Media Education,
Information Initiative Center,
Hokkaido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Web에서 붙여 넣기 한 레포트 는 NG【전편】



【 목표와 포인트 】

1. 인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여 레포트 등에서 적절한 인용을 할 수 있다.
 - 아오야마 선배는 아이코의 레포트에 대해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아오야마 선배의 지적을 항목별로 나누어 쓰고 그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서술한다.
 - 인용과 복사의 차이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서술한다.
2. 일본의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그 중, 인용에 대해 이해한다.
 - 인용이라고 인지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조사한다.
3.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과 해결상황을 조사해 파악한다.
 - 각국의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물의 기간이나 권리제한규정의 내용을 조사한다.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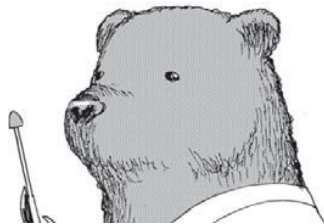
- 아오야마 선배가 아이코의 리포트에 대한 지적한 문제점을 항목별로 써보자.
- 나열한 각 항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의견을 설명해보자.
- 인용과 복사의 차이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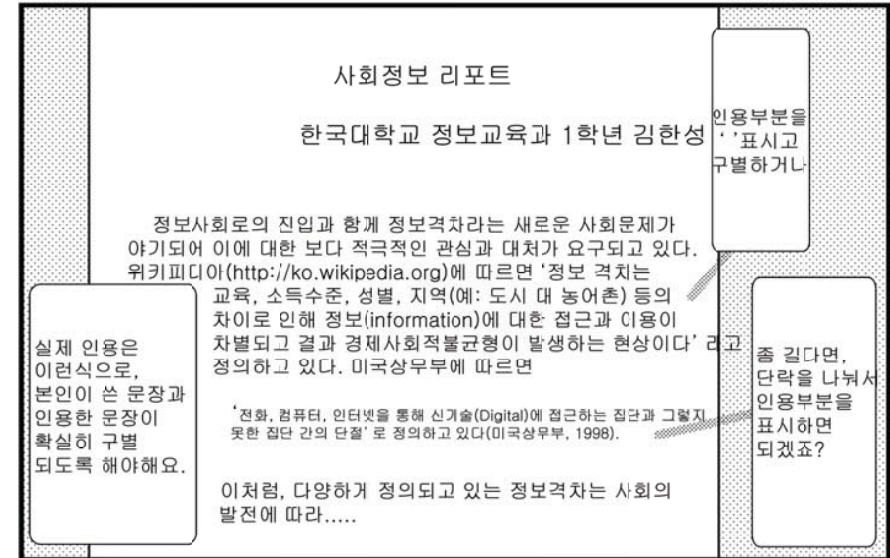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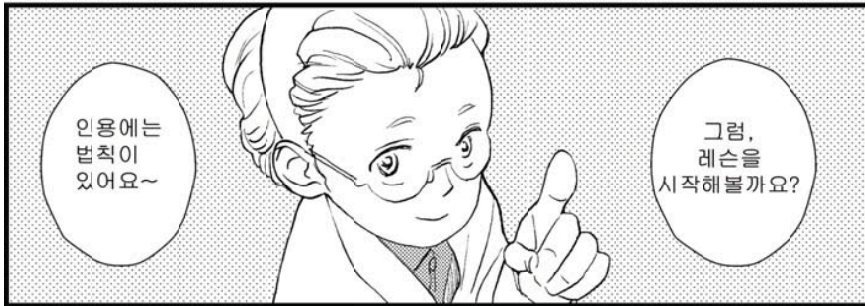
Web에서 붙여 넣기 한 레포트 는 NG【후편】

편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이 해봅시다.

- 저작권 법 상의 인용으로 간주하기 위한 조건을 작성한다.
- 일반적인 문헌의 인용과 웹상의 자료의 인용에서는 무엇이 다를까?
- 인용 부분과 자신의 문장과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인용에 관한 판례를 확인해보자.

*판례: 패러디사건: 사건번호 쇼와51 (재 923)





그리고 레포트 마지막엔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

서작자명

김한성, 인간과 교육
2009. 정보창의교육연구 출판사

김병욱, 정보창의력과 컴퓨터
2009. 정보창의논문지,
2008. 제 12권 1호.

이런 정보를 모아서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짱의
레포트는
어떤가요?

아이짱의 레포트

한국대학교 정보교육과 2학년 아이코

위키피디아에서는 정보격차를 교육, 소득수준과 같이 다양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불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인터넷의 활용에
차이가 나타나거나, 사는 곳에 의해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정보의 습득 능력이나 매체의 차이가 발생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용한건지...

출처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정보 격차는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결과 경제사회적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이나
농촌지역이나 산촌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등의
정보습득매체의 낙후성을 보이는 현상이
정보격차의 실제 사례들이다.'

확실히 URL은 있어도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장이랑은 좀
다르구나....

2012. 6.7

그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 인용문을 바꿔서 서술한것도
문제구요.

그래서
아이코짱의
레포트를 모두
수정해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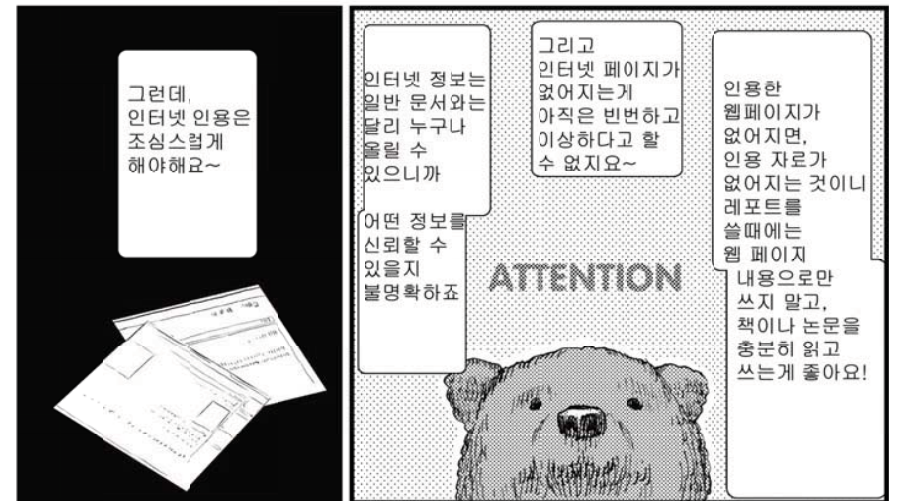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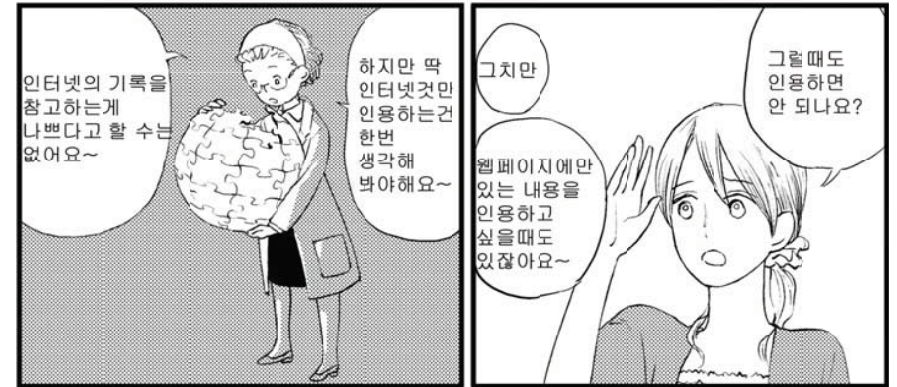
'정보 격차는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결과 경제사회적불균형이 생하는
현상이다. 직업이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이나 농촌지역이나 산촌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등의 정보습득매체의 낙후성을 보이는 현상이 정보격차의
실제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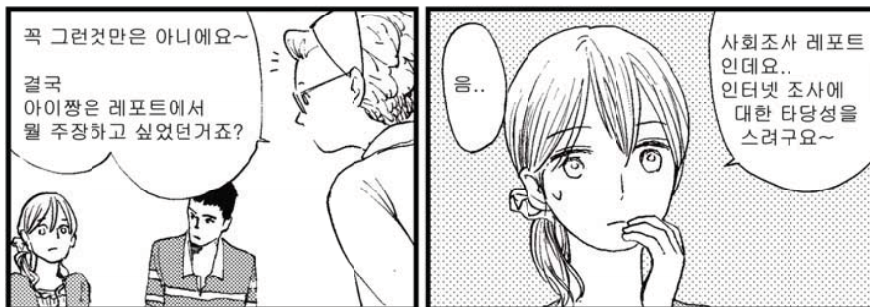
엇!

인용밖에
없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용부분이
추가되고, 자신의
문장이 조금 밖에
없다면,
인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료】위키피디아 등의 Web상의 기사로부터의 인용

학년 때, 위키피디아로부터의 「인용」은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말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야?



그것은, 선생님마다 다른거 같아. 그래도, 아오야마(青山)군과 같이, 위키피디아로부터의 「인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을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해. 확실하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좋겠지.
그럼, 위키피디아의 인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저작권법상의 인용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48조)을 올렸습니다. 즉,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때, 평소 때에는 저자명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만, 위키피디아의 경우는, 누가 저자가 됩니까?

저자 없이,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으로 기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키피디아는 기사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러 가지 참고가 되어요.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구축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시로 고쳐지고, 내용이 바뀝니다. 리포트를 썼을 때와 리포트의 제출 후에 인용된 내용이 다르게 되면, 인용의 의미가 없겠지요. 이것은, 위키피디아에 제한되지 않고, Web상의 모든 저작물에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서적의 소개와 같이, 원본이 서적으로서 있는 경우는 그것을 인용하면 좋습니다만, Web상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Web상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저작물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한 사람이 쓰고, 수시로 바뀌는 Web상의 기사는, 신뢰성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고,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사를 참고로 한 리포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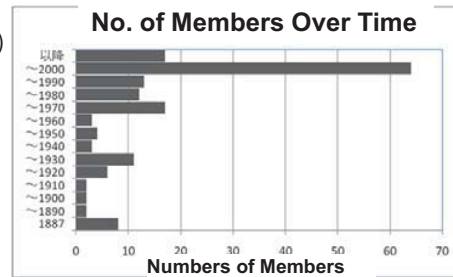


베른조약

저작물은 나라를 넘어서 보호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정이 국제적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조약이 베른 조약입니다.

베른 조약은 1886년에 유럽 제국을 중심으로 창설되어, 일본은, 1899년에 체결했습니다. 베른 조약은, 그 후 몇 번인가 개정 되어, 1971년의 파리 개정 조약이 가장 최근입니다. 2012년3월15일 현재, 가맹국은 165개국으로, 체결국수의 추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미국이 체결한 것은 1989년으로 최근입니다.

그림은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
(<http://www.wipo.int/portal/index.html.en>)
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베른 조약의 특징은, 무방식 주의(권리를 얻기 위한 수속 필요 없음), 내국민대우, 법률 효력을 들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 제10조에서의 인용(Quotations)의 기술을 주목해 주십시오.

「동맹국의 법령이 유효한 곳」이라는 유보 조건 없이,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일치하여, 동시에, 그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한 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 활동은 기본적으로 선인의 지식을 전제로 한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인용이란 형태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왼쪽으로 WIPO의 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베른 조약의 제10조를 일부 발췌합니다.

Article 10

Certain Free Uses of Works:

1. Quotations; 2. Illustrations for teaching; 3. Indication of source and author

(1) It shall be permissible to make quotations from a work which has already been lawfully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eir making is compatible with fair practice, and their extent does not exceed that justified by the purpose, including quotations from newspaper articles and periodicals in the form of press summaries.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ip/berne/pdf/trtdocs_wo001.pdf)

인용에 관한 대법원판례

패러디 사건:사건번호 쇼와(昭和)51(【오】) 923

사건명 (손해 배상) 재판일 쇼와(昭和)55년3월28일

법정명 대법원제3소법정

결과 파기 환송 판례집 제34권 3호 244페이지

원심재판소명:도쿄(東京) 고등법원 재판일 쇼와(昭和)51년5월19일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메이지(明治)32년 법률 제39호) 30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인용의 의의

2 남이 저작한 사진을 변조하여 이용하는 것에 의해 몽타쥬 사진을 작성해서 발행했을 경우와 저작자인격권의 침해

3 몽타쥬 사진의 작성 발행이 저작자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여겨진 사례

재판 요지

1 구 저작권법(메이지(明治)32년 법률 제39호) 30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인용이란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저작물 중에 남의 저작물의 원형으로서 일부를 채록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인용을 포함한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인용해서 이용 하는 쪽의 저작물과, 인용되어 이용되어지는 측의 저작물을 명료하게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고, 동시에, 양쪽 저작물간에 전자가 주인, 후자가 종속된 관계임을 요한다.

2 남이 저작한 사진을 변조하여 이용함으로써 몽타쥬 사진을 작성하여 발행했을 경우, 몽타쥬 사진으로부터 남의 사진에 있는 본질적인 특징자체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는, 몽타쥬 사진을 한 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작성 발행은, 남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눈의 사면을 스노타이어(snow tire)의 흔적과 같은 슈프르를 그리며 활강해 온 6명의 스키어를 촬영해서 제작한 판례와 같은 산악풍경 컬러사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슈프르를 타이어의 흔적으로 바꾸어 그 기점에 있는 눈의 사면에 거대한 스노타이어(snow tire)의 사진을 합성해서 작성한 판례와 같은 흑백의 몽타쥬 사진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 산악풍경사진의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법조

구 저작권법(메이지(明治)32년 법률 제39호)18조, 구 저작권법(메이지(明治)32년 법률 제39호) 30조 1항 2호, 구 저작권법(메이지(明治)32년 법률 제39호) 36조【노】 2

出所: 裁判所判例検索システム (2009.3.13現在)

http://www.courts.go.jp/search/jhsp0030?action_id=dspDetail&hanreiSrckKbn=01&hanreiNo=26442&hanreiKbn=06